



제335회 제1차 정례회
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
2022. 10. 6(목)

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74
제출일자	2022.09.23.
회부일자	2022.09.28.

행정보건복지위원회
전문위원실

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경상북도지사

2. 제안이유

- 아동보호업무는 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담·치료 및 교육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,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,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로서 전문성 및 축적된 경험이 요구되는 업무임
-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「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

나. 민간위탁 필요성

-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수혜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효율적임
- 이에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적·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 필요하며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포항선린재단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아동복지법 제46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)제2항에 관한 사항
 -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·치료 및 교육
 -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
 -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
 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

라. 사업개요

- 위탁기간 : 2023. 2. 1. ~ 2026. 1. 31.(36개월)
- 수탁기관 : 사회복지법인 포항선린재단

마. 소요예산 : 연 916백만원 정도

- 인건비 : 상담원 등 사업수행관련 인건비
- 운영비 : 공공요금, 차량운영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등
- 사업비 : 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치료비 등

※ 소요예산은 연도별 국비 지원 금액에 따라 매년 금액 변경 될 수 있음

바. 「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」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

- 심의기간 : 2022. 7. 30(금) ~ 8. 2(화)
- 심의방법 : 서면심의
- 심의내용 :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사전 적정성
- 심의위원 : 11명(당연직 5, 위촉직 6)
- 심의결과 : 적정(정책기획관-8532호, 2022. 08. 02.)

사. 「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」 심사결과

- 심의일시 : 2022. 9. 14.(수) 14:00
- 심의방법 :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종합하여 심의
- 심의내용 :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
- 심의결과 : 적 정
- 근 거 : 경상북도 사무위탁조례 제12조

4. 향후계획

- 2022. 12월 : 계약체결, 위탁사항 홈페이지 게시
- 2023. 2월 ~ :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

5. 관련법령(추진근거)

- 아동복지법 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등) 제4항
-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)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제5항
-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6. 검토의견

□ 제안이유

-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업무수행 역량과 사업의 연속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위해 「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6조제2항에 규정된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·치료 및 교육 등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위탁범위를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민간 위탁사무 범위

- 아동복지법 제46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)제2항에 관한 사항
 -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·치료 및 교육
 -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
 -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
 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

- 위탁기간은 2023. 2. 1. ~ 2026. 1. 31.까지 3년간으로 한 것은 「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」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내에 해당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,
- 또한, 수탁자 선정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 것도 「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」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.

< 경상북도 사무위탁조례 >

제10조(수탁기관 선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,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12조에 따른 경상북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제9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③~④ (생략)

제16조(위탁기간 및 재계약)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, 재계약할 수 있다.

-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 916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, 이는 상담원 등 사업수행관련 인건비와 공공요금, 차량운영비 등의 운영비, 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·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비 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□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여부

○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을 살펴보면,

< 아동복지법 >

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 ①~③ 생략

④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<개정 2019. 1. 15.>

○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에 따라 법적기준에 위배됨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또한, 민간위탁평가위원회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심의 결과 적정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.

*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2022. 7. 30(금) ~ 8. 2(화)

* 공문 : 정책기획관-8532호(2022. 08. 02)

□ 종합의견

- 본 동의안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(재계약)하기 위해 「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.
- 이번 동의안은 「아동복지법」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또한, 아동보호업무는 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담·치료,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,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,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로서 전문성 및 축적된 경험이 요구되는 업무임에 따라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다만, 의회동의 후 재위탁 운영에 따른 진행절차 등을 도의회 및 관계기관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